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5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6. 8
- 다. 상 정 일 자 : 2007. 6. 15 (제1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)

가. 제안사유

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가산금 조항 삭제(안 제14조)

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- ▶ 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음

3. 관계법령

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41조 등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전은

- 지하수 이용 구민들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모법인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구민에게 부담지우는 행위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며

-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, 세정담당관실을 비롯하여 법률 자문위원과 법제처 등 여러 기관, 부서의 의견 조회결과 『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』 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
-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단 단서에 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」 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□ 위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

5. 결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결